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점자교원 양성, 점자 능력 검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3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2.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70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의 정원”을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60명”을 “6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749”를 “754”로 하고, 일반직 계 “742”를 “7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57”을 “66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760”을 “1,7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34”를 “1,4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94”를 “1,397”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문화미디어산업실 1개 과	3명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34. (생 략) <u><신 설></u> 35. ~ 57. (생 략)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4. (현행과 같음) <u>34의2.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u> 35. ~ 57. (현행과 같음)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 부에 두는 <u>공무원의 정원</u> 은 별 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 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60</u> <u>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 ----- <u>공무원의 정원</u>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 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 -----. ② ----- ----- -----. ----- ----- <u>61</u> <u>명</u> ----- ----- ----- -----

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 ----- ----- -----. ④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9</u>	<u>754</u>	+5
·	·	·	
·	·	·	
일반직 계	<u>742</u>	<u>747</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57</u>	<u>662</u>	+5
·	·	·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60</u>	<u>1,763</u>	+3
·	·	·	
·	·	·	
일반직 계	<u>1,434</u>	<u>1,437</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94</u>	<u>1,397</u>	+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